■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1 호 서식]<개정 2016. 7. 26>

피해구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피해자 계좌의 송금·이체내역	금융회사	개설점포	예금종별
		계좌 번호		명의인
		송금·이체일시	금액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금융회사	계좌 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피해환급금 입금계좌	금융회사	계좌 번호	명의인

피해구제 신청사유

※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 16 조제 1 호에 의해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씨티은행 귀하

첨부서류	1.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 부 2.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	수수료 없 음

DEA-379 (20160728)